

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3년 4월 18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

● 법률 제19384호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을 “허가대상자,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으로 한다.

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(외국인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제2항에”를 “제2항제1호에”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.

1.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
2.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

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자”를 각각 “자(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5”를 “1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**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허가대상자,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

<법제처 제공>